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 - 174)

### 2. 제안이유

- 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지원단의 설치·운영, 구성(안 제3조~제4조)
-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5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평가 및 기록(안 제7조~제8조)

##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5. 검토의견

### 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

- 본 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됨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마포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

- 마포구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수습·복구를 위하여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사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주요 제정안 검토

-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에 대하여 크게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등 3개 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재난상황정보 신속 제공 노력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임.
-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라. 종합검토 의견

- 재난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사고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관이 협력한 구체적 지원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재난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 발생할지,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응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마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 검 토 보 고 서

2020. 12. 9.(수)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 1. 제안경위

- 제안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0. 11. 13.
- 회부일 : 2020. 11. 13. (의안번호 : 20 - 164)

## 2. 제안이유

-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부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함.

## 3. 주요내용

- 법정동 구역 변경(안 별표)
  - 아현동 350의 58번지 외 129필지 12,256.8㎡를 염리동으로 편입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부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법정동 구역 변경(안 별표) 아현동 350의 58번지 외 129필지 12,256.8㎡를 염리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연혁표를 보면 13번째 변경 실시하는 것이며,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부지가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발생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